

의안번호	2213364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 계 번호	25B5380

식량안보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2억 5,600만원(연평균 5,1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00	—	—	—	—	100	20
식량안보위원회(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	31	31	31	31	31	156	31
합계	131	31	31	31	31	256	51

주: 1.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방법·규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내외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식량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여야 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식량안보위원회)	식량안보와 관련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량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국을 둔(제6항)	의무규정
5	안 제11조(식량위기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備蓄)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2조(식량위기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식량위기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위기 발생 이전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체계 및 식량위기 발생 시 그 위기단계별 추진체계를 각각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추진체계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3조(식량안보의 평가 및 지표의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7조제3항 각 호의 지표들과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식량안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안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4조(적정식량자급률 달성시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적정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실천현황을 평가·확인하여야 함(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농수산물을 비롯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농지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보전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여야 함(제4항)	
9	안 제15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해외에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농업 및 개발도상국 농업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해외에 위치한 곡물 엘리베이터(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말함)를 인수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0	안 제17조(식량의 비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국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비축하여야 함. 이 경우 비축하는 식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을 하역·비축·가공·유통하기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1	안 제18조(통일 대비 쌀의 비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남북한 통일 시 식량 부족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쌀을 상시적으로 비축·유지하여야 함. 이 경우 연간 비축량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최소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쌀로 조성하고, 그 부족분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여 충당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등으로 방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의 비축과 제3항에 따른 쌀의 방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2	안 제19조(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은 식량안보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20조(업무의 위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표의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의 책무)	—	• 미대상: 국가가 국내외 식량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8조(식량안보위원회)	○	• 유사사례 참고 -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제1항)
4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	• 유사사례 참고 -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제4항)
		×	• 제3호: 현 시점에서 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원,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제6항)
5	안 제11조(식량위기 대응)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식량위기 단계 및 진단 기준,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단계별 추진체계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12조(식량위기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7	안 제13조(식량안보의 평가 및 지표의 개발)	×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안보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식량안보의 평가 및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8	안 제14조(적정 식량자급률 달성 시책)	×	•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적정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달성·제고 시책, 지역별 실천현황 평가·확인, 농지 등의 효율적 이용·보전,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을 위한 예시가격 지지 등은 구체적 품목, 사업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9	안 제15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	×	• 제3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농업 및 개발도상국 농업협력사업 지원,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인수자에 대한 지원,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지원 비용 등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수입식량 품목, 비축량, 품목별 필요 시설 및 설치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나, 제정안은 보조·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0	안 제17조(식량의 비축)	×	- 제3호: 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공공비축 단가, 물량, 보관 및 방출비용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국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 비축
11	안 제18조(통일 대비 쌀의 비축)		- 식량 하역·비축·가공·유통 시설 설치 또는 설치비용 지원 - 남북한 통일 시 식량 부족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쌀 상시적 비축·유지 - 비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쌀을 가공용쌀 등으로 방출 - 통일부장관이 쌀의 비축·방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
12	안 제19조(정보의 공개)	×	제3호: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이 식량안보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홍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3	안 제20조(업무의 위탁)	×	제3호: 현 시점에서는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업무의 범위·내용, 업무 위탁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을 내용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기본계획 수립 사례

(단위: 백만원)

유사 기본계획	수립비용
제3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촉진 기본계획 연구	100
적정농지 확보계획 수립방안 연구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00	—	—	—	—	100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식량안보위원회(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조)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식량안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규정¹⁾

-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13명(약 60%)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위촉직 위원(민간위원)은 10명 이상²⁾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

1) 제정안은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그 규모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식량안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분과위원회는 실무위원회 1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2개 등 총 3개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중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유사하게 약 60% 규모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식량안보위원회 심의·조정·의결 사항³⁾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분한 것임

[표 4] 식량안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구분			주요 기능 (안 제6조제2항)	총 인원	민간위원 (약 60% 규모)
식량안보위원회 (본위원회 1개)			아래 1.~7.의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23	13
분과 위원회 (3개)	실무위원회 (1개)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5
	분야별 전문위원회 (2개)	정책 신설· 평가·개선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식량안보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식량안보 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식량안보 강화 정책에 관한 사항	8	5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6. 식량안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3

주: 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본위원회와 동일하게 약 60% 규모로 구성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
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⁴⁾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3개) 각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3) 안 제6조(식량안보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이행 및 계획의 점검
3.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식량안보 정책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식량안보 관련 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식량안보 정책에 관한 사항
6. 식량안보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4)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222쪽)

[표 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유사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2023~2025년

(단위: 회)

	2023	2024	2025	합계	평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	4	2	10	3.3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5	6	4	15	5

주: 회의 횟수는 출석회의 및 서면회의를 합산한 것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2026.3.)

□ 추계 결과,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5,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식량안보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명, 회, 만원/명·회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본위원회	민간위원 수(A)	13	13	13	13	13	—
	회의개최 횟수(B)	4	4	4	4	4	—
	사례금 단가(C)	30	30	30	30	30	—
	소계 (D=A×B×C)	15.6	15.6	15.6	15.6	15.6	78
분과위원회(3개) - 실무위원회(1개) - 분야별 전문위원회 (2개)	민간위원 수(E)	13	13	13	13	13	—
	회의개최 횟수(F)	4	4	4	4	4	—
	사례금 단가(G)	30	30	30	30	30	—
	소계 (H=E×F×G)	15.6	15.6	15.6	15.6	15.6	78
합계(I=D+H)		31	31	31	31	31	156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단수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